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19. 4. 25.>

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					처리기간
					3일
신청인	① 성 명		② 생년월일		
	③ 주 소	(전화:)			
④ 상 호(명 칭)					
⑤ 업 종					
⑥ 영업소 소재지		(전화:)			
⑦ 등록(허가)번 호					
⑧ 등록(허가) 연월일	. . .				
⑨ 재발급 사유					

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라 [□ 관광사업 등록증 / □ 카지노업 허가증 / □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/ □ 유원시설업 허가·신고증]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[문화체육관광부장관 / 특별자치시장 / 특별자치도지사 / 시장·군수·구청장 / 지역별 관광협회장] 귀하

※ 구비서류	수수료
등록증·허가증·신고증 또는 지정증(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	3,000원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